

대전광역시의회 공고 제2018 - 63호

「대전광역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 개정을 위해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 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5일

대전광역시의회 의장

대전광역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1. 제안이유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및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기구 신설·폐지 및 명칭변경 내용을 「대전광역시의회 위원회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에 신설된 인사혁신담당관을 추가하고, 공보관을

대변인으로, 자치행정국을 자치분권국으로, 감사관을 감사위원회로 변경함(안 제3조).

나. 복지환경위원회 소관에 신설된 공동체지원국을 추가하고, 보건복지여성국을 보건복지국으로 변경함(안 제3조).

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과학경제국을 일자리경제국과 과학산업국으로 변경하고, 폐지된 도시재생본부와 대중교통혁신추진단을 삭제하며, 도시주택국을 도시재생주택본부로 변경함(안 제3조).

3. 의견제출

가.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2월 10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의회의장(참조 : 운영전문위원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기재)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35242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대전광역시의회 의회사무처 운영전문위원실)

(전화 042-270-5121, FAX 042-270-5049, E-mail : kyo1@korea.kr)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컴퓨터통신, 직접방문 등

4. 개정 조례안 : 붙임

대전광역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가목 중 “공보관, 감사관”을 “대변인, 인사혁신담당관”으로, “자치행정국”을 “자치분권국”으로, “인재개발원”을 “인재개발원, 감사위원회”로 한다.

제3조제2항제3호 중 “보건복지여성국”을 “공동체지원국, 보건복지국”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4호 중 “과학경제국, 도시재생본부”를 “일자리경제국, 과학산업국”으로, “대중교통혁신추진단, 도시주택국”을 “도시재생주택본부”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① (생략)</p> <p>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p> <p>1. (생략)</p> <p>2. (생략)</p> <p style="padding-left: 20px;">가. <u>공보관</u>, <u>감사관</u>, <u>기획조정실</u>, <u>시민안전실</u>, <u>자치행정국</u>, <u>문화체육관광국</u>, <u>소방본부</u>, <u>인재개발원</u>, <u>대전마케팅 공사</u></p> <p style="padding-left: 20px;">나. (생략)</p> <p>3. <u>복지환경위원회</u> : <u>보건복지여성국</u>, <u>환경녹지국</u>, <u>상수도사업본부</u>, <u>보건환경연구원</u>, <u>시설관리공단</u></p> <p>4. <u>산업건설위원회</u> : <u>과학경제국</u>, <u>도시재생본부</u>, <u>교통건설국</u>, <u>대중교통혁신추진단</u>, <u>도시주택국</u>, <u>건설관리본부</u>, <u>농업기술센터</u>, <u>대전도시공사</u>, <u>도시철도공사</u></p> <p>5. (생략)</p> <p>③ (생략)</p>	<p>제3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① (현행과 같음)</p> <p>② -----.</p> <p>1. (현행과 같음)</p> <p>2. (현행과 같음)</p> <p style="padding-left: 20px;">가. <u>대변인</u>, <u>인사혁신담당관</u>, ----- ----- <u>자치분권국</u>, ----- ----- <u>인재개발원</u>, <u>감사위원회</u>, -- -----</p> <p style="padding-left: 20px;">나. (현행과 같음)</p> <p>3. ----- : <u>공동체지원국</u>, <u>보건복지국</u>, ----- -----</p> <p>4. ----- : <u>일자리경제국</u>, <u>과학산업국</u>, ----- <u>도시재생주택본부</u>, ----- -----</p> <p>5. (현행과 같음)</p> <p>③ (현행과 같음)</p>

관계법령

□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5조(실·국·본부의 설치) 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조정실, 시민안전실, 일자리경제국, 과학산업국, 자치분권국, 공동체지원국, 문화체육관광국, 보건복지국, 환경녹지국, 교통건설국, 도시재생주택본부 및 소방본부를 둔다.

제5장 합의제행정기관

제76조의2(대전광역시 감사위원회의 설치) 법 제116조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라 시장 소속하에 대전광역시 감사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76조의3(감사위원장) 감사위원회에 감사위원장을 두며, 감사위원장은 감사위원회를 대표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76조의4(소관사무) 감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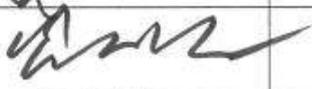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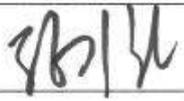
1. 감사정책 및 주요감사계획에 관한 사항
2. 회계관계직원 등에 대한 변상명령 처분에 관한 사항
3. 징계 및 문책 처분 요구에 관한 사항
4. 시정·주의·개선·권고·통보·고발 조치에 관한 사항
5. 재심의에 관한 사항
6. 적극행정 면책 심사에 관한 사항

□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2조(보좌기관) 대전광역시시장(이하 “시장”이라고 한다) 밑에 대변인, 행정부시장 밑에 인사혁신담당관을 둔다.

【대전광역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 의 의 원 명 단

연 번	발 의 의 원 명	서 명	비 고
1	김찬술		
2	박혜리		
3	홍종원		
4	손희영		
5	이흥호		
6	유애민		
7	남진권		
8	정기현		
9			
10			
11			
12			
13			
14			
15			
16			